



현행 가입대상	개정(추가대상)
-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근로자 - 퇴직연금제도* 가입한 재직근로자 *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	- 자영업자 -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▶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▶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-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- 직역연금 가입자 ▶ 『공무원연금법』 적용받는 공무원 ▶ 『군인연금법』 적용받는 군인 ▶ 『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』 적용받는 교직원 ▶ 『별정우체국법』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

이제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~!

와!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하네~!

